

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칙

2021 년 9 월 27 일 부분개정안
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회칙개정소위원회
 위원장 심재용
 김태원 류찬열 박소은 박현우 이병우 이유나 이주석 이지환 이찬형 정의창 추동형 홍정인
 황준용

제 1 장 총칙	2
제 2 장 전체학생총회	4
제 3 장 학생총투표	5
제 4 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	6
제 5 장 확대운영위원회	9
제 6 장 중앙운영위원회	10
제 7 장 연석회의	
제 1 절 개관	11
제 2 절 연석전체학생총회	11
제 3 절 연석학생대표자회의	12
제 4 절 연석중앙운영위원회	13
제 8 장 총학생회장단	15
제 9 장 비상대책위원회	17
제 10 장 중앙집행국	19
제 11 장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	20
제 12 장 특별기구	21
제 13 장 재정	23
제 14 장 선거	25
제 15 장 회칙개정	
제 1 절 양 캠퍼스 공동 회칙 개정	27
제 2 절 자연과학캠퍼스 회칙 개정	27
부칙	28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명칭)

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(이하 "본회")라 한다.

제 2 조 (목적)

본회는 교수, 교직원, 동문과 더불어 대학의 4 주체로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생회 자치활동과 건학이념인 修,己,治,人과 교시인 仁,義,禮,智을 바탕으로 진보적인 학문탐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설치)

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내에 둔다.

제 4 조 (회원)

- ① 입학·편입학 등으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학부 과정 소속이 된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된다.
- ② 졸업·자퇴·퇴학 등으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학부 과정 소속이 아니게 된 자는 그 즉시 회원 자격을 잃으며, 정학 등의 사유로 등교가 정지된 자는 그 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. 단,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,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.
- ③ 본회의 정회원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재학생 전원으로 한다.
- ④ 휴학 또는 수료 상태에 있는 자는 해당 기간 중 준회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는다.

제 5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- ①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- ②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나 본회 및 기타 정당한 학생활동에 대한 침해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.
- ③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칙에 의한 학생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.
- ④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 모든 회의에 참가할 권리, 본회의 운영 및 집행 전반에 관하여 보고 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⑤ 본회의 정회원은 학문 사상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언론, 출판, 집회, 결사의 자유 및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- ⑥ 본회의 정회원은 자유로운 정치활동의 권리를 갖는다.
- ⑦ 회원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제반사항의 의무와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받는다.
 1. 선거권 및 피선거권
 2. 본회 산하 의결기구에 제출될 서면 발의권
 3. 본회 산하 의결기구 의결권
 4. 학생회비 납부의 의무
- ⑧ 제 7 항에도 불구하고 직선제로 선출된 학생대표자가 휴학 또는 수료 상태에 있는 경우 전 항 제 1 호 및 제 4 호를 제외한 제반사항의 의무와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받는다.

제 6 조 (본회의 구성)

본회는 목적 달성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체학생총회, 전체학생대표자회의, 확대운영 위원회, 중앙운영위원회, 중앙집행국, 각 단과대 및 독립학부 학생회, 각 학부 및 학과 학생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.

제 7 조 (학교운영참여)

본회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.

1.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중요사항
2. 학생권익과 밀접한 사항
3. 본교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진행
4.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한 사항

제 8 조 (자문위원회)

본회는 그 활동에 있어 필요한 경우 회원들의 요구에 의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제 2 장 전체학생총회

제 9 조 (지위)

전체학생총회(이하 "총회")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.

제 10 조 (구성)

총회는 본회의 정회원 전원 및 준회원 중 직선제로 선출된 학생대표자로 구성한다.

제 11 조 (의장)

- ① 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. 다만 총학생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. 부총학생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대행한다. 총,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궐위, 탄핵, 해임결의가 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중 호선하여 대행한다.
- ② 총학생회장단이 안건의 주제일시 총학생회장단이 의장이 될 수 없으며, 본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1 인의 임시의장을 호선하고,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거친다.

제 12 조 (업무 및 권한)

총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1. 총학생회장, 부총학생회장의 탄핵안 심의, 의결
2. 기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상정한 안건 및 본회 회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, 의결
3. 연석전체학생총회 안건의 상정, 심의 및 조정

제 13 조 (회의 및 운영)

- ① 총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, 또는 본회 정회원 1/10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을 시 의장이 소집한다.
- ② 총회는 10 일 전에 그 소집을 공고해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총회는 총회 구성원의 1/4 이상 출석으로 개최된다.

제 14 조 (의결)

- 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제 13 조 3 항에 의거, 총회의 개최 또는 의결이 불가(무산)할 경우, 그 안건 처리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위임한다.
- ③ 제 2 항의 실행에 있어 제 12 조 1 항은 제외된다.
- ④ 총회의 의결방식은 원칙적으로 무기명투표로 한다. 단, 필요에 따라 비표에 의한 기명투표도 할 수 있다.

제 3 장 학생총투표

제 15 조 (지위)

학생총투표는 본 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방식이다.

제 16 조 (권한)

학생총투표는 본회의 존립 및 회의 활동과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 17 조 (구성)

학생총투표는 본회의 유권자 전체로 구성된다.

제 18 조 (회의 및 운영)

- ① 학생총투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.
 1.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심의를 통한 경우
 2.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에 의한 경우
 3. 총학생회장의 요구에 의한 경우
- ②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투표 시작일 10 일 이전에 사유를 명시하고 학생총투표 실시를 공고한다.
- ③ 학생총투표는 발의 후 30 일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학생총투표는 보통, 평등, 비밀, 직접투표에 의한다.
- ⑤ 양 캠퍼스의 공통적 사안으로 간주되는 경우, 공동 진행이 가능하다.
- ⑥ 학생총투표 심의를 위해 연석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19 조 (의결)

학생총투표는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단, 학생총투표가 부결될 경우, 부결된 안건과 동일한 안건은 당해 학기에 안건으로 재상정하지 못한다.

제 20 조 (관리)

- ① 학생총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. 제 18 조 5 항에 따라 공동 진행할 경우 양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관리한다.
- ② 투표는 선거시행세칙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한다.

제 4 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

제 21 조 (지위)

전체학생대표자회의(이하 “전학대회”)는 총회의 위임 기구이며, 동시에 본회의 심의, 의결 및 감사기구이다.

제 22 조 (대의원 구성)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.
 1. 총학생회장, 부총학생회장
 2. 각 단과대학·독립학부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
 3. 각 과 학생회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
 4. 전학대회에서 특정 집단을 대표한다고 인정된 특별자치기구의 대표단
 - 1) 동아리연합회 회장, 부회장, 각 분과장
 5. 각 단과대학·독립학부의 비례대의원
- ② 전학대회 대의원은 소속 기구 회원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 선거로 뽑힌 대표에 한한다.
- ③ 각 학부 및 학과는 다음 공식에 따라 선출된 C 명의 비례대의원을 소속 단과대학 또는 해당 독립학부의 총회 또는 총회의 권한을 위임받는 회의기구에서 인준하여 파견한다.
(비례대의원 선출기준 인원은 2 학기에 시행되는 직선대표 선거 당시 최종 등록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.)

$$\text{식 1} \quad \frac{\text{각 단위의 재학생 수}}{\text{각 단위의 직선대표 수}}$$

(위 값은 직선대표당 대표하는 학생수를

$$\text{식 2} \quad B = \frac{\text{각 단위의 재학생 수}}{\text{전체 A 중 최솟값} \times 3}$$

(3은 현재에서 제시한 1:3의 비율의 값을 의미한다.)

$$\text{식 3} \quad C = B - \text{해당 단위의 직선대표 수} = \text{해당 단위의 비례대의원 수}$$

1. 비례대의원은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 선거로 선출하며, 각 단과대·독립학부선거와 같이 시행한다. 선출방법은 각 단과대·독립학부 운영위원회의에서 인준한 방법에 따라 자격과 기준을 정한다.
2. 선출된 비례대의원은 각 단과대학·독립학부의 회칙에 따라 총회 혹은 총회의 권한을 위임받는 회의기구에서 인준하며, 인준 후 중앙운영위원회에 통보 및 학내 구성원에게 공표함으로써 비례대표 의원의 자격을 갖는다.
3. 비례대의원은 전학대회 7 일 전까지 인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선거증빙자료와 함께 통보한다.

제 23 조 (의장)

전학대회 의장은 본회의 총학생회장이 맡는다. 단, 제 70 조에 의한 탄핵 안건 시 탄핵 당사자가 의장이 될 수 없으며, 탄핵 당사자를 제외한 본회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 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.

제 24 조 (소집)

- ① 전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.
-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 1 회로 하며, 의장이 소집한다.
- ③ 임시회의는 재적의원 1/3 이상의 요구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- ④ 전학대회의 소집은 7 일 전에 공고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.
- ⑤ 전학대회의 개최가 불가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10 일 이내에 재소집하고, 재소집이 불가능 할 경우 전학대회 안건은 확대운영위원회에 위임된다. 단, 제 25 조 3 항은 제외된다.
- ⑥ 전학대회와 확대운영위원회의 대의원 구성이 동일할 때 전학대회 안건은 확대운영위원회에 위임된다.
- ⑦ 전학대회는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비대면 화상 회의로 일부 대체될 수 있다.

제 25 조 (업무 및 권한)

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.

1. 본회의 회칙개정 심의와 발의 및 의결
2. 총회의 소집 요구
3. 총학생회장단 탄핵소추안 심의
4. 학생총투표 심의
5. 신설 단위학생회장의 자격 인준
6. 본회 각 집행국장의 출석 요구
7. 본회 각 집행국장의 인준 및 해임 의결
8. 신설 특별기구의 인준
9. 독립기구를 제외한 특별기구장의 인준 및 해임의결
10. 본회 사업의 검토, 조정 감사 및 의결
11. 본회 예·결산안 심의, 조정 및 의결
12. 학생회비 심의 및 조정, 감사 및 의결
13. 기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및 전학대회 대의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, 의결
14. 학부 또는 단과대학 학생회 회칙, 특별기구회칙 등이 총학생회칙에 저촉되는지 여부의 심의, 권고의결
15.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 요구
16. 학생총회의 위임받은 사안에 대한 심의, 의결

제 26 조 (개회)

- ① 전학대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된다.

제 27 조 (의결)

- ① 전학대회의 의결권은 제 22 조에 규정된 자만이 갖는다.
- ② 전학대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전학대회 의결권은 대의원 1 인당 1 표를 가지되, 단위 당 최대 2 표로 제한한다.
- ③ 단, 다음과 같은 경우 특별의결정족수를 적용한다.
 - 1. 제 25 조에 규정된 전학대회의 의결사항 중 제 5 호, 제 8 호 및 제 11 호에 규정된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/3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2. 제 25 조에 규정된 전학대회의 의결사항 중 제 1 호 및 제 2 호에 규정된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제 1 항의 발의에 관련해서는 제 117 조 2 호를 우선 적용한다.

제 5 장 확대운영위원회

제 28 조 (지위)

확대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의 위임기구이자 총학생회 운영기구이다.

제 29 조 (구성)

확대운영위원회는 직선으로 선출된 총학생회장단과 각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장단, 각 과 학생회장단,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으로 구성한다.

제 30 조 (의장)

확대운영위원회 의장은 본회의 총학생회장이 맡는다. 단, 제 70 조에 의한 탄핵 안건 시 탄핵 당사자가 의장이 될 수 없으며, 탄핵 당사자를 제외한 본회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 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.

제 31 조 (소집)

- ①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- ② 확대운영위원회의 소집은 7 일 전에 공고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.
- ③ 확대운영위원회는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일부 대체될 수 있다.

제 32 조 (업무 및 권한)

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.

1. 본회 회칙개정안의 심의 및 발의
2. 전학대회 안건의 심의 및 조정
3. 본회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조정
4. 본회 예·결산안 심의 및 조정
5. 본회 각 집행국장의 출석 요구
6. 전학대회 소집 요구

제 33 조 (개회)

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
제 34 조 (의결)

확대운영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확대운영위원회 의결권은 위원 1 인당 1 표를 가지되, 단위 당 최대 2 표로 제한한다.

제 6 장 중앙운영위원회

제 35 조 (지위)

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설 의결기구이며, 운영기구이다.

제 36 조 (구성)

-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과 단과대 및 독립학부 학생회장단,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으로 구성한다.
- ② 중앙집행국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사업 보고 및 제안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
- ③ 필요에 따라 제 1 항, 제 2 항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.

제 37 조 (의장)

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본회의 총학생회장이 맡는다. 다만 총학생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. 총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1 인을 호선하여 의장으로 한다.

제 38 조 (소집)

-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를 둔다.
- ②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는 매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임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의 요구 또는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한다.

제 39 조 (업무 및 권한)

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.

1. 본회 제반 사업을 심의 및 조정하여 확대운영위원회에 제출
2. 본회의 예·결산안을 심의 및 조정하여 확대운영위원회에 제출
3. 중앙집행국장의 업무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심의
4. 확대운영위원회 안건의 심의 및 조정
5.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안건의 상정, 심의 및 조정
6. 본회 회칙개정안의 심의
7. 그 밖의 본회의 제반 업무 수행

제 40 조 (개회)

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 단위 2/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 단,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각각 하나의 단위로 인정한다.

제 41 조 (의결)

중앙운영위원회는 출석 단위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이때 의결권은 총학생회장단을 제외하고 각 단위 당 하나씩을 인정한다.

제 7 장 연석회의

제 1 절 개관

제 42 조 (목적 및 구성)

- ① 연석회의는 자연과학캠퍼스와 인문사회과학캠퍼스로 나뉘어 있는 이분화 캠퍼스의 상황을 극복하고, 학교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과 공동의 사업을 펼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② 연석회의는 연석전체학생총회, 연석학생대표자회의, 연석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.

제 43 조 (기타)

그 외의 사항은 각 캠퍼스에 관한 조항에 준한다.

제 2 절 연석전체학생총회

제 44 조 (지위)

연석전체학생총회(이하 "연석총회")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(이하 "전회")의 최고 의결기구이다.

제 45 조 (구성)

연석총회는 전회의 정회원 전원 및 준회원 중 직선제로 선출된 학생대표자로 구성한다.

제 46 조 (의장)

- ① 의장은 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총회를 주재한다.
- ② 연석총회의 의장은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과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이 공동으로 맡는다. 다만 총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의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. 총학생회장단 모두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 캠퍼스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 인 이 임시 의장이 된다.

제 47 조 (소집)

- ① 연석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.
 1. 연석학생대표자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면 발의
 2. 전회 회원 1/10 이상의 서면 발의
 3. 각 캠퍼스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서면 발의
- ② 연석총회는 10 일 전에 그 소집을 공고해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소집할 수 있다.

제 48 조 (업무 및 권한)

연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1. 연석학생대표자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
2. 각 캠퍼스 총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
3. 기타 전회 회원에 의해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및 의결

제 49 조 (개회)

- ① 연석총회는 자연과학캠퍼스 정회원의 1/4 이상과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정회원의 1/4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- ② 연석총회의 개회가 불가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10 일 이내에 재소집하고, 재소집이 불가할 경우 연석총회 안건은 연석학생대표자회의에 위임된다.

제 50 조 (의결)

연석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3 절 연석학생대표자회의

제 51 조 (지위)

연석학생대표자회의(이하 "연학대회")는 연석총회의 위임 기구이며, 동시에 전회의 심의, 의결 및 감사 기구이다.

제 52 조 (대의원 구성)

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연학대회 대의원이 된다.

1.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단
2. 양 캠퍼스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장단
3. 양 캠퍼스 각 과 학생회장단
4. 양 캠퍼스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

제 53 조 (의장)

- ① 의장은 연학대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회의를 주재한다.
- ② 연학대회의 의장은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과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이 공동으로 맡는다. 다만 총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의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. 총학생회장단 모두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 캠퍼스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 인 이 임시 의장이 된다.

제 54 조 (소집)

- ① 연학대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.
 1. 연학대회 재적의원 1/3 이상의 요구
 2.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1/2 이상의 요구
- ② 연학대회는 10 일 이전에 소집을 공고해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소집할 수 있다.

제 55 조 (업무 및 권한)

연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.

1. 연석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
2. 연석총회 안건의 상정, 심의 및 조정

제 56 조 (개회)

- ① 연학대회는 자연과학캠퍼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- ② 연학대회의 개회가 불가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10 일 이내에 재소집하고, 재소집이 불가할 경우 연학대회 안건은 연석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된다.

제 57 조 (의결)

연학대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단위당 최대 2 표로 제한한다.

제 4 절 연석중앙운영위원회

제 58 조 (지위)

연석중앙운영위원회(이하 "연석중운")는 전회의 상설 의결기구이자, 운영기구이다.

제 59 조 (구성)

- ① 연석중운은 양 캠퍼스의 총학생회장단, 단과대 및 독립학부 학생회장단,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으로 구성한다.
- ② 중앙집행국장은 연석중앙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사업 보고 및 제안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.
- ③ 필요에 따라 본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.

제 60 조 (의장)

- ① 의장은 연석중운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회의를 주재한다.
- ② 연석중운의 의장은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과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이 공동으로 맡는다. 다만 총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의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. 총학생회장단 모두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 캠퍼스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 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.

제 61 조 (소집)

- ① 연석중운은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를 둔다.
- ② 정기 회의는 총학생회장단 임기 시작일로부터 반기에 한 번씩 소집한다.
- ③ 임시 회의는 각 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.

제 62 조 (업무 및 권한)

연석중운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1. 양 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
2. 연학대회 안건의 상정, 심의 및 조정
3. 전회의 동의 또는 합의가 필요한 사안의 심의 및 조정
4. 기타 전회 제반 사업의 심의 및 조정

제 63 조 (개회)

연석중운은 각 캠퍼스 재적 단위 2/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 단,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각각 하나의 단위로 인정한다.

제 64 조 (의결)

연석중운은 출석 단위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이때 의결권은 총학생회장단을 제외하고 각 단위 당 하나의 의결권을 인정한다. 단, 연석중운의 의결권은 각 단위당 1 표를 인정한다.

제 8 장 총학생회장단

제 65 조 (구성)

- ① 총학생회장단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.
- ② 전체회의의 총학생회장단은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단과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단으로 구성한다.

제 66 조 (지위)

- ①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총회, 전학대회, 확대운영위원회, 중앙운영위원회, 중앙집행국 회의 등의 의장이 된다.
- ② 총학생회장단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단과 함께 소속 캠퍼스의 대표로서 지위와 책임을 가진다.
- ③ 총학생회장단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으며 신분이 보장된다. 단, 총학생회장단이 졸업 자퇴 퇴학 등으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학부 과정 소속이 아니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.

제 67 조 (의무)

총학생회장단은 성균관대학교 전체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, 실현함과 아울러 대학의 자치실현과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할 의무를 부여받는다.

제 68 조 (업무 및 권한)

- ①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자치활동을 보장하고, 업무 실행에 있어서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본회의 대표로서 본회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중앙운영위원회, 확대운영위원회, 전학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총회, 전학대회, 확대운영위원회, 중앙운영위원회, 연석회의, 중앙집행국 회의를 소집한다.
- ④ 본회 각 중앙집행국의 국장 및 차장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.
- ⑤ 본회 각 중앙집행국의 국장, 차장, 국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.
- ⑥ 총학생회 예산 담당국에서 편성된 예·결산안, 사업계획 등을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거쳐 확대운영위원회 및 전학대회에 제출한다.
- ⑦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, 총학생회장의 궐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.
- ⑧ 총학생회장단은 각 집행부서의 지도, 조절, 통제 등의 일상 업무를 관장한다.
- ⑨ 총학생회장단은 차기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업무전반에 대해 인수인계하여야 한다.

제 69 조 (임기)

- ①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선거 당선 확정 공표일로부터 차기 선거 종료일까지로 한다.
- ②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자의 임기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궐선거 당선 확정 공표일로부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70 조 (탄핵)

- ①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.
 1. 전회의 총학생회장단
 2. 본회의 총학생회장단
 3. 본회의 총학생회장
 4. 본회의 부총학생회장
- ② 총학생회장단이 직무 집행에 관련하여 회칙 위반 혹은 범법행위, 학칙 위반 등의 반사회적 행위를 행한 경우,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전학대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.
 1. 본회 회원 1/10 이상의 연서
 2. 전학대회 대의원 1/3 이상의 서면 발의
- ③ 전회의 총학생회장단 탄핵의 경우, 전회 회원의 1/10 이상의 연서에 의해 연학대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.
- ④ 탄핵안 발의 시, 그 대상자는 탄핵안의 발의 직후부터 전체학생총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거나, 탄핵 투표가 부결되기 전까지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된다.
- ⑤ 전학대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뒤, 20 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. 단, 전체학생총회를 개최하지 못했을 시, 탄핵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.
 1. 체학생총회의 개회를 통한 탄핵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
 2. 탄핵안 통과 후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탄핵투표관리위원회 구성
 3.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탄핵 투표 실시
- ⑥ 탄핵 투표에 의한 기타 사항은 「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」을 준용한다.
- ⑦ 탄핵 투표는 본회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투표가 무산될 시 탄핵 투표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- ⑧ 탄핵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. 단 탄핵안 또는 탄핵투표가 부결될 경우, 부결된 탄핵안과 동일한 사유에 따른 탄핵안은 당해 학기에 안건으로 재상정하지 못한다.

제 9 장 비상대책위원회

제 71 조 (구성)

-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로부터 72 시간 이내에 구성한다. 단, 제 1 호의 경우 전임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에는 전임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종료된 후 구성한다.
 1.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때
 2. 총학생회장단이 궐위되었을 때
 3. 총학생회장단이 탄핵되었을 때
-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.

제 72 조 (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)

- ① 비상대책설립위원회는 제 71 조 제 1 항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24 시간 이내에 구성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. 단, 11 월 선거가 무산된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동아리연합회, 모든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가 종료된 후 7 일 이내에 구성한다.
 1.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사유
 2.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원
 3.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및 일정
- ②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한다. 단, 11 월 선거 무산에 의한 구성은 차기 연도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한다.
- ③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 중 호선된 1 인으로 한다. 다만, 11 월 선거무산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해당 연도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 인이 차기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의 직을 수행한다.
- ④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1 차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후보를 선정하여야 하며 2 차 회의에서 다음에 의한 간선투표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부위원장을 선출한다.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, 최다득표자가 위원장, 차득표자가 부위원장이 된다.
- ⑤ 제 1, 2 차 회의의 소집·진행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의장이 한다.
- ⑥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부위원장 선출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24 시간 이후에 해소한다.
 1.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부위원장 선출과정(후보자 정보 · 투표방식 · 투표결과)
 2.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부위원장 선출과정(선출자 정보)
 3.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해소 공지

제 73 조 (업무 및 권한)

-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.
-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중앙운영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.
-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,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
- ④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중앙집행국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중앙집행국을 구성한다.
- ⑤ 임시중앙집행국은 각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단위별 집행부 중 최대 1 인씩 추천하여 구성하며,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제 74 조 (비상대책위원장)

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. 비상대책위원장은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제 75 조 (비상대책위원장의 업무 및 권한)

비상대책위원장은 총회, 전학대회, 학대운영위원회, 중앙운영위원회, 연석회의를 소집하고,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제 76 조 (기타)

기타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에 준한다.

제 10 장 중앙집행국

제 77 조 (지위)

중앙집행국은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며, 총학생회가 결정한 전체 사업계획을 집행하는 기구이다.

제 78 조 (구성)

- ① 중앙집행국은 총학생회장단, 각 집행국의 국장, 차장, 국원으로 한다.
- ② 중앙집행국은 총학생회장단이 구성하여 전학대회에 인준한다.

제 79 조 (업무 및 권한)

중앙집행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.

1. 전체학생총회, 전학대회, 확대운영위원회, 중앙운영위원회 및 총학생회장단 의해 결정된 업무를 집행한다.
2. 중앙집행국의 모든 구성원은 제반 사업보고와 예산 및 결산안을 전체학생총회, 전학대회, 확대운영위원회,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.
3. 중앙집행국의 모든 구성원은 전체학생총회, 전학대회, 확대운영위원회,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와 위 기구들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를 가진다.
4. 각 국의 국장은 총학생회 기구 전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단과대학학생회, 학부/학과 학생회까지 동일 부서별 연석회의를 둘 수 있다.

제 80 조 (회의)

중앙집행국 회의는 제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학생회장단 혹은 구성원 중 2 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.

제 11 장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

제 81 조 (지위)

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 및 학부의 최고 자치기구이다.

제 82 조 (독립학부)

특정 단과대학에 속하지 않은 학부, 또는 소속 단과대학에서 그 학부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할 때 확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학부를 독립학부라 한다.

제 83 조 (구성)

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 및 학부의 회원 전원으로 한다.

제 84 조 (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장단)

- ① 각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장단은 각 단과대학 및 학부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한다.
단, 각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총학생회칙에 준하여 따른다.
- ② 각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장단은 각 단과대학 및 학부 학생회를 대표하여 본회 중앙운영위원으로서 중앙운영위원회에 참가할 의무를 가진다.

제 85 조 (업무 및 권한)

- ①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는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의 자치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.
- ②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의 최고 의결기구는 각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총회이며, 그 다음 의결기구는 각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운영위원회이다.
- ③ 각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의 최고집행기구는 각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의 집행국이며,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 집행국은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대표자회의와 단과대학 및 학부 운영위원회에서 사업보고를 할 책임을 갖는다.

제 12 장 특별기구

제 86 조 (특별기구의 성립 요건)

본회는 회원들의 원활한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성립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때 회칙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서 그 산하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에 걸맞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1. 본회 회원 중 특정위치에 준하여 그 이해와 요구를 자치활동으로 수렴, 발현할 필요가 있을 때
2. 본회 회원 중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자치활동을 꾸준히 수행하여 그들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을 때
3. 본회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하는 활동이지만 그 재원마련과 수익금의 사용이 학생회비의 내역으로 인정될 수 없을 때
4.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조직이 필요할 때
5. 본회의 관련분야 집행국이 없거나 존재하고 있는 집행국 활동으로는 회원전체 또는 특정회원의 자치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

제 87 조 (절차)

본회 산하의 특별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.

- ① 전회 정회원 중 1/10 이상의 서명과 회원명부, 소개서, 전년도 활동보고서, 사업계획서, 서약서를 준비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. 단, 제 86 조 1 호, 4 호 및 5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년도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한다.
- ② 각 캠퍼스에 한해서 설치될 때에는 해당캠퍼스 정회원의 1/10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.
- ③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, 전학대회에서의 의결을 통해 특별기구의 건설을 인준한다.
- ④ 전학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인준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후 당해 학기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다.
- ⑤ 본회 산하의 특별기구간 전환을 하는 경우, 본조의 제 1 항, 제 2 항 및 제 3 항을 따른다. 단, 독립기구 또는 계열기구에서 부속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, 임시 또는 정기 전학대회의 의결을 통해 인준한다.

제 88 조 (분류, 구성, 위상)

특별기구는 각 기구 구성원의 위촉과 각 기구장단의 선출방식, 각 기구 활동의 특성에 따라 독립기구, 부속기구, 임시기구, 계열기구로 구성된다.

- ①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라 함은 제 86 조의 제 1 호, 제 2 호 및 제 5 호를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, 그 기구장이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것을 주된 특성으로 하는 특별기구를 일컫는 것으로 현재의 동아리 연합회를 포함한다.
- ② 특별기구 중 부속기구라 함은 제 86 조의 제 1 호, 제 3 호 및 제 5 호의 성립요건을 그 주된 특성으로 하는 특별기구를 일컫는 것으로 한다.
- ③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라 함은 제 86 조의 제 4 호 및 제 5 호의 성립요건을 가지는 것으로 하며 그 역할이 다하면 해체된다. 단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 후 등록절차는 제 104 조에 따른다.
- ④ 특별기구 중 계열기구라 함은 제 86 조의 제 1 호, 제 2 호, 제 3 호 및 제 5 호의 성립요건을 그 주된 특성으로 하되 각 과나 본회 기층 조직에 기반을 두는 학회나 소모임, 동아리의 연합을 일컫는다.

제 89 조 (재정)

- ① 특별기구 중에 독립기구만이 본 회비에서 그 기구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. 독립기구는 재정의 사용내역을 정기 전학대회에 보고한다. 단, 동아리연합회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심의를 받는다.
- ② 이 외의 특별기구들은 필요에 따라 사업 기획서와 예산서를 첨부해서 재정을 신청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의 인준을 거쳐 학생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.

제 90 조 (특별기구장)

- ① 특별기구장단은 원칙적으로 각 특별기구의 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한다.
- ② 특별기구장의 선출이 불가능할 때에는, 독립기구장을 제외하고는 총학생회장단이 추천하여,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후,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. 단,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장은 총학생회장단이 추천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- ③ 특별기구 중에 독립기구장단은 본회 중앙운영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.
- ④ 특별기구 중에 계열기구장은 본회 전학대회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.
- ⑤ 이 외의 특별기구장은 본회 중앙집행국과 동일한 자격을 지닌다.

제 91 조 (특별기구의 해체)

- ① 특별기구 해체 시 해당 학기 전학대회의 인준을 거쳐 해체한다.
- ② 특별기구 해체 시 해당 학기 전학대회에서 학생회비 결산의 의무를 가진다.

제 13 장 재정

제 92 조 (재원)

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학교 보조금, 사업별 회비,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.

제 93 조 (학생회비)

학생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되며 회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배정하여 전학대회에서 심의, 조정한다.

제 94 조 (회계연도)

-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다.
- ② 본회의 재정은 매년 1 학기와 2 학기로 나누어 집행한다.

제 95 조 (예산)

- ① 예산은 중앙집행국 회의에서 항목별로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,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심의, 조정하여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.
- ② 확정된 예산안은 3 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96 조 (결산)

- ① 매 학기마다 중앙집행국에서 결산을 하여 중앙운영위원회, 확대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
- ② 최종 결산은 중앙운영위원회 심의종료 15 일 이내에 공고한다.
- ③ 결산서는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되어야 하며, 구체적인 결산의 방식은 총학생회, 단과대학 및 학부 학생회, 특별기구의 회칙에 따른다.

제 97 조 (거부권)

- ① 전학대회에서 의결한 예산서에 이의가 있을 시에 10 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심의 요구가 있을 시 3 일 이내에 예·결산안을 검토, 수정하여 전학대회에 제출한다.
- ③ 전학대회에서 이를 15 일 이내에 심의하여 즉시 공고한다.

제 98 조 (예산관리 및 인출)

- ① 예산은 학교당국에 예치하고 모든 인출사항은 각 단위 대표자가 관리한다.
- ② 학생회비 인출 거부 및 삭감, 동결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학대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하다.

제 99 조 (감사위원회)

- ① (지위) 감사위원회는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의 지위를 가진다.
- ② (발의) 학생회비 내역에 대한 심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시에는 전학대회의 발의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③ (구성) 감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2 명과 확대운영위원회 대의원 중 중앙운영위원을 제외한 2 명, 학생회 간부를 제외한 일반학우 3 명으로 구성한다.
- ④ (대상)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의 대상은 총학생회, 단과대학 및 학부 학생회, 특별기구로 한다.
- ⑤ (권한) 감사위원회는 총학생회, 단과대학 및 학부 학생회, 특별기구에 대하여 예·결산 자료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총학생회, 단과대학 및 학부 학생회, 특별기구 대표는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.
- ⑥ 감사위원회는 발족 후 3 주 내에 감사활동 결과를 대자보, 학내언론사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. 단, 총학생회와 부속, 계열, 임시기구에 대한 감사는 총학생회 선거가 끝나기 전에 공고해야 한다.
- ⑦ 감사결과에 대한 문책은 전학대회에서 결정한다.

제 100 조 (세칙)

기타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학대회에서 정한 재정집행세칙에 의한다.

제 14 장 선거

제 101 조 (선거 원칙)

본회의 선거는 보통, 직접, 평등, 비밀선거의 원칙에 의한다.

제 102 조 (선거 시기)

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매년 11 월말에 실시한다. 부득이한 경우 세부 일정은 연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 103 조 (입후보자)

- ① 총학생회장단 입후보자는 본회 정회원으로 5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.
- ② 총학생회장단 입후보자는 캠퍼스 별 2 인으로 하여 자연과학캠퍼스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4 인 1 조로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해야 한다.

제 104 조 (중앙선거관리위원회)

-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(이하 "중선관위")는 선거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.
- ② 중선관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.
 1.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속된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장단 중 최소 2 인
 2.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학부 및 과 학생회장단 중 최소 1 인
 3. 독립기구장단 중 최소 1 인
-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 선거관리위원 중 1 인으로 호선한다.
 1. 중선관위는 투표일 50 일 전에 구성된다.
 2. 중선관위는 선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
제 105 조 (선거운동)

본회의 회원은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 단, 전학대회 대의원과 중앙집행국의 구성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
제 106 조 (당선)

선거인 재적수의 과반수 투표의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단일 후보의 경우 유효득표의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.

제 107 조 (당선무효)

- ① 1, 2 위 득표자의 득표차이가 유효득표의 오차표 수를 넘지 않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.
- ② 오차율이 유효투표수의 3%가 넘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.

제 108 조 (재투표)

- ① 제 107 조 1 항의 경우 해당 선본 간에 재투표를 실시한다.
- ② 제 107 조 2 항의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.

제 109 조 (선거무효)

- ① 전체 투표율이 50%가 안 될 경우에는 선거가 무효화한다.
- ② 선거시행 전반에 걸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중선관위는 연학대회를 소집할 수 있고 연학대회의 판단에 의해 선거자체를 무효화 처리할 수 있다.

제 110 조 (재선거)

선거자체가 무효 처리될 경우 입후보 절차부터 다시 재선거를 실시하며,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중선관위에서 결정한다.

제 111 조 (보궐선거)

- ①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단 모두가 궐위되었을 때, 30 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 단, 궐위 시점이 당해 2 학기 종강일로부터 140 일 이하일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조항에 준한다.
- ② 보궐선거에 대한 사항은 연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.

제 112 조 (선거 시행세칙)

기타 선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연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「 선거시행세칙 」에 의한다.

제 15 장 회칙개정

제 1 절 양 캠퍼스 공동 회칙개정

제 113 조 (공동발의)

본회 회칙 중 '총칙', '연석회의', '총학생회장단', '비상대책위원회', '선거', '회칙개정 제 1 절 양캠퍼스 공동 회칙개정'에 대한 회칙개정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된다.

1. 자연과학캠퍼스 정회원 1/10 이상과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정회원 1/10 이상의 서면 발의
2. 연학대회 대의원 중 자연과학캠퍼스 대의원 과반수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대의원 과반수의 서면 발의
3. 자연과학캠퍼스 중앙운영위원 2/3 이상과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중앙운영위원 2/3 이상의 서면 발의

제 114 조 (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)

- ①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(이하 "연석회개소위")는 회칙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전회의 임시기구이다.
- ② 합동발의를 통한 연석회개소위는 회칙개정 발의 즉시, 연학대회에서 구성한다.
- ③ 합동발의를 통한 연석회개소위는 회칙개정안을 각 캠퍼스 전학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15 조 (의결)

- ① 합동발의를 통한 회칙개정의 의결은 연석중운을 거쳐 각 캠퍼스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.
- ② 합동발의를 통한 회칙개정의 의결은 각 캠퍼스 전학대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16 조 (공포)

총학생회장은 개정된 회칙을 회칙개정안 가결일로부터 3 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.

제 2 절 자연과학캠퍼스 회칙 개정

제 117 조 (발의)

본회 회칙개정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된다.

1. 본회 회원 1/10 이상의 서면 발의
2. 전학대회 대의원 1/3 이상의 서면 발의
3. 중앙운영위원 2/3 이상의 요구
4. 총학생회장의 요구

제 118 조 (회칙개정소위원회)

- ① 회칙개정소위원회(이하 "회개소위")는 회칙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본회의 임시기구이다.
- ② 회개소위는 회칙개정 발의 즉시, 확대운영위원회 중에서 구성한다.
- ③ 회개소위는 회칙개정안을 전학대회 소집 시 공지하여야 한다.
- ④ 회개소위는 회칙개정안을 전학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19 조 (의결)

- ① 회칙개정의 의결은 중앙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를 거쳐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.
- ② 회칙개정의 의결은 전학대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20 조 (공포)

총학생회장은 개정된 회칙을 3 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.

부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회칙은 공포한 날 3 일 이후에 시행한다.

제 2 조 (유권해석)

이 회칙의 유권해석은 전학대회에 있다.

제 3 조 (관례의 종용)

기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
제 4 조 (독립성)

이 회칙은 양 캠퍼스의 독립성을 보장한다.

제 5 조 (효력의 제한)

총학생회장단의 임기 변경을 위한 회칙개정은 그 회칙개정 가결 당시의 총학생회장단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.